

- 새로운 미래,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구미시의회 -

2022년도 주요업무계획



의회사무국



목 차



I. 일반 현황 3

- ① 의회 현황
- ② 사무국 조직
- ③ 의회 관련 단체

II. 의정 목표와 방향 7

- ① 여건과 환경
- ② 목표 및 추진방향

III. 주요 사업 11

- ①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
- ② 연수 및 의원 교육을 통한 의원 역량 강화
- ③ 국제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선진도시 비교견학
- ④ 체계적인 회기 운영을 통한 정책의회 실현
- ⑤ 알기 쉽고 믿을 수 있는 회의록 작성 및 공개
- ⑥ 시민들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구현
- ⑦ 제9대 구미시의회 개원에 따른 의정활동 홍보
- ⑧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
- ⑨ 언론보도 피해구제 자문변호사 운영
- ⑩ 상임위원회 운영 및 의정활동 역량 강화
- ⑪ 정책지원관 운영 및 의정활동 전문성 증대

I . 일 반 현 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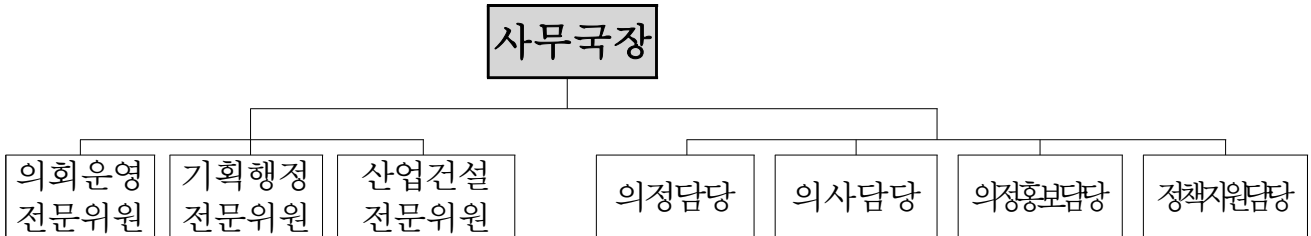
1 의회 현황

- 의 원 수 : 정원 25명 (현원 25명) ※제8대 구미시의원 정원 대비 2명 증가
- 기 구 : 의장, 부의장, 상임위원회, 특별위원회
 - 상임위원회 : 각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
 - 특별위원회 : 특정한 안건을 심사
- 위원회 소관 및 직무

구 분	소관 및 직무	비고
의 회 운 영 위 원 회 (9명)	•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작성의 협의,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 • 타 상임위원회 간 안건 및 일정의 조정 등과 관련된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•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•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	
기 획 행 정 위 원 회 (12명)	•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, 홍보담당관, 문화체육관광국 • 행정안전국, 사회복지국, 도시건설국(종합허가과), 구미보건소 • 선산보건소, 평생학습원, 문화예술회관, 노인종합복지관 • 서울사무소,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, 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	
산 업 건 설 위 원 회 (12명)	• 경제지원국, 사회복지국(식품위생과), 도시건설국, 환경교통국 • 선산출장소, 농업기술센터, 상하수도사업소 •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, 차량등록사업소 • 읍·면 소관에 속하는 사항	
윤 리 특 별 위 원 회 (9명)	•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심사 •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심사	

2 사무국 조직

○ 기 구 : 3전문위원, 4담당/ 정원 : 38명, 현원 : 34명



○ 주요업무

구 분	업 무	비 고
전 문 위 원	•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, 의원 입법활동 지원 및 보좌	
의 정 담 당	• 의정활동 지원, 예산편성·집행, 의원등록, 재산관리 등	
의 사 담 당	• 본회의 운영, 간담회 등 회기운영, 의정기록, 특별위원회 지원	
의 정 홍 보 담 당	• 의회홍보, 기록보존, 방송통신, 언론사 관리 등	
정 책 지 원 담 당	• 정책지원, 의원연구단체, 정책관련연구 및 조사 등	

3 의회 관련 단체

○ 경상북도 시·군 의회 의장 협의회

- 회 원 : 경상북도 23개 시군의회의 의장 (당연직 회원)
- 매월 1회 월례회 개최
 - 매월 23개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
 - 제302차 월례회 구미시의회 주최 예정 (8월 중)
- 기 능 : 경상북도 내 시군 의회간의 발전방향을 협의, 정기 회의를 통한 지역현안 사업 지원,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과제 발굴·건의

○ 경상북도 중서부지역 시·군 의회 의장협의회

- 회 원 : 6개 시군 의장 (구미, 김천, 상주, 칠곡, 고령, 성주)
- 기 능 : 지역 간 특성과 행정환경이 유사한 지역으로 의정활동의 상호 정보교환 및 자치단체 발전 방안 모색 등 상생 발전을 위한 광역권 지방자치 실현

II. 의정 목표와 방향

1 여건과 환경

- ☐ 제8대 의회 마무리 및 제9대 의회 출범
- 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회적 책임과 중요성 확대
- ☐ 시민들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감 상승

2 목표 및 추진방향

목 표

시민들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



추진
방향

- ▶ 시민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는 지방자치 구현
- ▶ 합리적, 효율적, 다양한 의정활동
- ▶ 전문성 확보로 의회 기능과 역할에 충실
- ▶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춘 재정활동

Ⅲ. 주 요 사 업

1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

◇ 지방자치법 개정 및 제9대 의회 출범에 따라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으로 신뢰받는 의회상 제고

□ 전환기(8대→9대) 의회 청사 환경 개선

- 소요예산 : 67백만 원
- 사업시기 : 1~8월 중
- 내 용
 - 사무 공간 리모델링 : 전문위원실, 정책지원관 사무실 확보
 - 의원실 정비 : 의원수 증원에 따른 의원사무실 정비
 - 현황판 등 정비 : 제8대 의원 액자, 각종 현황판 등 정비

□ 행사와 조화로운 의전 지원

- 행사 성격에 맞춘 의전 추진
 - 시 기 : 연중 (수시)
 - 대 상 : 국경일 등 각종 기념일, 행사, 기공식, 준공식 등
 - 방 법 : 행사 주관 부서와 협조체계 확립을 통한 조화로운 의전 지원
- 의전 사전 준비 철저 및 상황에 맞는 현장 의전 수행
 - 의원 참석 여부 확인, 차량 배차 및 탑승 등 사전 준비 철저
 - 의전 서열에 따른 행사장 내 의원 좌석 배치 확인
 - 의원별 행사장 현장 좌석 안내
 - 내빈 소개 시 누락 여부 등 현장 즉각 조치
 - 의전 서열의 조정 등 돌발상황 발생에 따른 추가 조치 철저

2 연수 및 의원 교육을 통한 의원 역량 강화

◇ 다양한 의원 교육 지원으로 의정지식 함양 및 생산적인 의정활동 역량 강화로 선진 의정 구현

□ 추진방향

- 비교견학이 가능한 지역으로 하반기 국내 의원연수 추진
-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의회 방면 전문가 초청을 통한 교육
- 법정 교육 (부패방지, 이해충돌방지법, 4대 폭력 예방교육 등) 이수

□ 추진계획

- 의원연수 : 1회 (하반기 중)
 - ※ 위원회 또는 의원 협의로 실시
 - 소요예산 : 20백만 원 정도
 - 장 소 : 추후선정 (의견수렴 후 결정)
 - 대 상 : 전체의원
 - 추진방법 : 민간위탁 (연수전문기관) ※ 세부추진 계획은 별도 수립
 - 주요내용 : 강의, 비교견학, 산업시찰 등

※ (참고 - 직전 연수 내역)

연도	교육 일시	장소	위탁업체	연수내용	지출액 (천원)	비고
2021	11.10~ 11.12	제주도	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	지역특성화사업 견학, 예산안 심사과정 강의, 우수사례 비교견학, 발전소 산업시찰 등	위탁비 8,160 여비 1,921 계 10,513	의원12명 참여
2020	11.11 ~11.13	제주도	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	현장 벤치마킹 부패방지교육, 예산안 교육	위탁비 8,700 여비 2,909 계 11,609	의원15명 참여

○ 강사초청교육 : 1회 (8월 말 예정)

- 소요예산 : 2백만 원
- 장 소 : 3층 상황실 또는 간담회장
- 대 상 : 전체의원
- 교육내용 : 의정 실무 교육, 부패방지법, 이해충돌방지법 등

※ (참고 - 직전 교육 내역)

연도	교육 일시	장소	초빙강사	위탁업체	교육내용	지출액(원)
2021	4.9	간담회장	서우선 정창수	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	지방자치법 전면개정, 행정사무감사	3,265,700
	7.16	간담회장	이지문	자체교육	부패방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	757,900
2020	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 연수 미 실시					

- 추진방법 : 공공위탁 또는 자체교육 (국회의정연수원, 전문가 초빙)
- 주요내용 : 법정의무교육 (부패방지교육,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등)
임의교육 (의정실무, 현안 관련 명사 특강, 공직선거법, 교양 등)

○ 공공위탁교육 (개별)

- 소요예산 : 각 교육과정에 따라 상이 (예산편성액 7백만 원)
- 장 소 : 위탁교육센터 (국회사무처,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)
- 대 상 : 개별의원 (희망자)
- 추진방법 : 희망자 우선 교육 위탁 (예산 한도 내 추진)
- 교육내용 : 조례안 입안 및 심사 등 의회전반에 대한 교육

□ 기대효과

- 의정활동에 필요한 관련 지식의 습득으로 전문적인 의회운영
- 벤치마킹을 통한 우리시만의 특색 있는 선진 의정 구현
- 법정교육 이수율 통한 청렴하고 깨끗한 의회 지향

3 국제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선진도시 비교견학

- ◇ 시민이 공감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 및 의정활동을 위한 견문 확대
- ◇ 선진 우수사례 발굴과 창의적인 정책 개발 등 구미시 발전 방안 강구

□ 근 거

-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 및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

□ 개 요

- 시 기 : 연중 (1회)
- 소요예산 : 75백만 원
 - 산출내역 : 3,000,000원 (의원 1인당) × 25명 = 75,000,000원
- 장 소 : 국외 일원 (출장목적에 따라 상이)
- 방 법 : 전체의원 또는 상임위원회별 연수 실시
- 내 용 : 해외도시의 우수 복지, 문화 교육시설 등 벤치마킹

※ (참고 - 최근 국외연수 추진현황)

연도	연수기간	연수국가	참가인원	내용
2018	11.18.~11.22.	일본	13명	일본 선진시책 우수사례 비교를 통한 시정 대안제시 및 반영
2017	11.15.~11.20.	베트남	13명	국제화 마인드 향상 및 의정역량 강화
2016	11. 2.~11. 9.	뉴질랜드 호주	9명 (산업위)	국제화 마인드 향상 및 의정역량 강화
2016	10. 6.~10.11.	중국	8명 (기획위)	국제화 마인드 향상 및 의정역량 강화

※ 코로나19 발생 등에 따라 2019년 이후 국외연수 미실시

□ 기대효과

- 글로벌 시대에 맞는 선진적 감각과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 제공
- 전문성을 높이고 선진문화 환경을 행정에 접목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

4 체계적인 회기 운영을 통한 정책의회 실현

◇ 내실 있는 회기 운영을 통해 입법기능 강화와 정책의회 구현

□ 회기(정례회 및 임시회)

- 회의일수 : 100일 이내(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 연장 가능)
 - ※ 근거 : 「구미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
- 정례회(45일) : 조례에 따라 연 2회 집회
 - 제1차 정례회 : 매년 6월 2일(지방선거 실시연도 : 9월 1일)
 - 의결사항 : 행정사무감사, 결산안 승인, 기타 안건 심사 등
 - 제2차 정례회 : 매년 11월 25일
 - 의결사항 : 다음 연도 예산안, 기타 안건 심사 등
 - 정례회 집회일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본회의 의결로 변경 불가
- 임시회(55일) : 안건 심의·의결을 위해 필요에 따라 소집
 - 집회요구 : 구미시장, 재적의원 1/3(9명) 이상 요구
 - 집회공고 : 집회일 3일전 구미시의회 홈페이지 공고
 - 임시회는 15일 이내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함
 - ※ 지방선거 후 최초 임시회는 사무국장이 소집
 - ※ 의장·부의장 모두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는 의원 중 최다선 의원(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)이 소집
- 회기흐름

집회공고	집회일 (회기결정)	폐회일		
폐회 중 (위원회 활동 가능)	본회의	<본회의 휴회> - 위원회 활동 - 의원 자료수집	본회의	폐회 중 (위원회 활동 가능)

□ 2022년도 회기 운영 계획(안)

○ 연간 회의 일수 : 100일 (정례회 2회 / 45일, 임시회 7회 / 55일)

구 분	회 기		회의 일수	본회의 일 수	주 요 안 건	비 고
계	정례회 2회 임시회 7회		100	20		
임시회	제255회	1.18(화)~ 1.25(화)	8	4	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	※ 설(구정) 연휴 - 1.31(월)~2.2(수)
	제256회	3.15(화)~ 3.21(월)	7	2	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 ■ 결산감사위원 선임 ■ 현장방문	※ 제20대 대통령선거 - 3.9(수) ※ 결산감사 4월 예정
	제257회	4.12(화)~ 4.19(화)	8	2	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 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	※ 도민체전(포항) - 5월 예정
	제258회	6.3(금)~ 6.8(수)	6	2	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 ■ 현장방문	※ 제8회 지방선거 - 6.1(수)
	제259회	7.1(금)~ 7.5(화)	5	2	■ 제9대 전반기 의장단 선거 ■ 제9대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 등 ※ 제9대 의원 개원식	※ 9대 전반기 원 구성
	제260회	7.12(화)~ 7.22(금)	11	2	■ 시정업무보고 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	
제1차 정례회	제261회	9.1(목)~ 9.23(금)	23	2	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 ■ 행정사무감사 ■ 202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	※ 추석 연휴 - 9.9(금)~9.12(월)
임시회	제262회	10.18(화)~ 10.27(목)	10	2	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 ■ 의원연수 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	
제2차 정례회	제263회	11.25(금)~ 12.16(금)	22	2	■ 2023년도 예산안 심사 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 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	

※ 위 계획은 의회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5 알기 쉽고 믿을 수 있는 회의록 작성 및 공개

◇ 정확한 회의록 작성 및 홈페이지 게재로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신뢰 의회 구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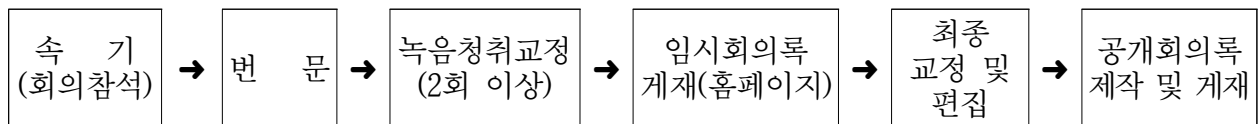
□ 회의록 제작 및 공개

○ 회의록 제작

- 제작횟수 : 연 9회 (정례회 2회, 임시회 7회)
- 제작부수 : 회기별 2부 (의회사무국 보존 1, 집행부 배부 1)
※ 근거 : 지방자치법 제84조 (회의록)

○ 회의록의 공개

- 공개 절차



- 임시회의록 : 회의록 작성 후 공개회의록 게재 전까지
- 공개회의록 : 임시회의록 최종 교정 및 편집 후 게재

□ 수록내용

- 본회의, 상임위원회, 특별위원회 등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, 출석의원 성명 등
※ 회의 중 의원의 모든 발언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
- 회의 관련서류 (상정의안, 검토보고서, 심사보고서 등)

□ 기대효과

- 회의록 홈페이지 게재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
- 자료 및 의사발언의 정확한 작성으로 의사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신뢰 받는 의회 구현

6

시민들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구현

◇ 시민의 권익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해 청원·민원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여 적극적인 열린 의회 구현

□ 청 원 : 시민이 행정으로부터 받은 피해의 구제, 공무원 징계, 시정요구 및 조례·규칙의 제개정·폐지 등을 지방의회에 요구하는 행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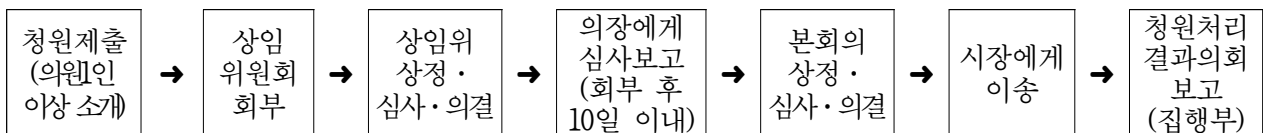
○ 근 거 : 「지방자치법」 제85조 및 「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」

○ 요 건 : 구미시의회의원 1명 이상의 소개, 청원의 취지, 이유 등을 명시

■ 불수리 사항

-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및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
- 동일 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
- 법령에 위배되는 것 등

○ 처리절차



※ 청원인 통지 (접수, 위원회 회부, 본회의 의결 및 청원 처리결과서)

□ 일반 민원 (건의민원, 질의민원, 기타민원 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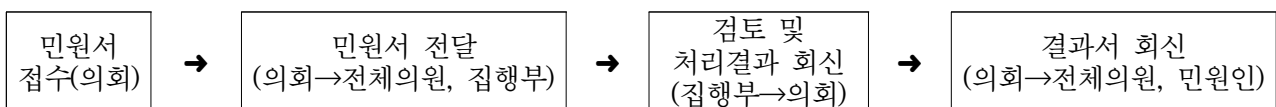
○ 운영기간 : 연중

○ 접 수 처 : 의회홈페이지, 우편, 방문

○ 불수리 사항

- 유사·동일한 내용의 반복적인 게시물
- 의회 및 시 관계부서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

○ 처리절차



※ 민원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협의검토 절차를 거치며 그 결과에 따라 처리

7

제9대 구미시의회 개원에 따른 의정활동 홍보

- ◇ 제9대 구미시의회 개원 내용 등을 신속·정확하게 홍보하여 시민의 알권리 제공 및 열린 의회상 제고

□ 제9대 의회 홈페이지 운영 및 개편

- 기 간 : 연중 (개편 6 ~ 8월)
- 대 상 : 시의회(1) 및 의원(25) 홈페이지
- 주요내용
 - 의원 홈페이지 신설 및 디자인 개편
 - 의원별 발언회의록, 의정활동 자료 연계
 - 의정활동 사진, 소식지, 영상물 및 보도자료 게재
 - 의안 처리현황 및 각종 의안 통계자료 제공
 -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개편과 시각화된 콘텐츠 제공

□ 제9대 의회 홍보 영상물 제작

- 사업기간 : 9 ~ 10월 중
- 소요예산 : 22백만 원
- 영상분량 : 8분 내외 (1편)
- 구 성
 - 제9대 의회 원 구성 현황 및 의원소개
 - 제9대 의회 의정활동 방향, 의정성과 및 연혁 등
- 활 용 : 의회 1·2층 로비 영상물 송출 및 홈페이지 게시

□ 제9대 의원별 의정활동 동영상 제작

- 제작기간 : 하반기 중 1회
- 제작방법 : 외부용역
- 소요예산 : 7.5백만 원
- 제작내용
 - 의원별 의회·지역구 활동 등 의정활동 전반 동영상 제작
 - 의원 개인홈페이지 동영상 업로드

8

의정활동 홍보 내실화

- ◇ 의정활동 내용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시민의 궁금증 해소 효과적인
시의회 홍보
- ◇ 언론사 및 홍보매체 활용을 통한 시의회 인지도 및 호감도 제고

□ 의회 방송실 운영

- 운영기간 : 회기 100일 정도
- 운영방법 : 전문업체 위탁운영
- 소요예산 : 78백만 원
- 운영내용
 - 본회의, 상임위원회 회의 실시간 중계
 - 청사(본청) 내 케이블 TV
 - 구미시의회 홈페이지, 모바일(스마트폰)
 - 녹화방송 : 의회 홈페이지 게시 - 인터넷, 모바일(스마트폰)

□ 의회 소식지(제48호) 발간

- 발간시기 : 하반기 중 1회
- 발간부수 : 1,000부 내외
- 소요예산 : 10백만 원
- 배 부 처 : 집행기관(실·과·소, 읍·면·동), 유관기관 등
- 수록내용 : 의정활동 전반

□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 홍보

- 대상매체 : 신문, 방송사, 인터넷 언론사
- 홍보방법 : 보도자료 배포 및 취재 협조
- 주요 내용
 - 의사일정 및 주요안건 처리 현황
 - 현장방문 활동, 의원발의, 주요 조례 내용 등
 - 반기별·연도별 의정성과(기획기사)
 - 보도기사 모니터링(스크랩)을 통한 홍보 피드백

9

언론보도 피해구제 자문변호사 운영

◇ 의정활동 관련 왜곡, 편파, 과장 등 진실되지 아니한 언론보도로 피해발생 시 신속한 피해구제 청구권 행사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

○ 관련근거

-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
- 언론보도 피해구제 청구권 행사계획[구미시의회-5160(2013.11.1)]

○ 자문변호사 : 지효준 변호사(위촉기간 2022. 1. 1. ~ 2023. 12. 31.)

○ 자문변호사의 직무

- 언론보도와 관련 의회에서 요청한 법률적 자문
-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관련 정정보도 청구, 조정신청 등 소송관련 자문
- ※ 소송제기 시 별도 변호사 선임
- 기타 의정활동 홍보와 관련한 법률적 자문 등

▶ 정정보도 청구 요건

- 기 한 :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
- 대 상 : 언론사,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
- 기 타
 - 해당 언론보도 후 6개월 경과 후 청구권 없음
 -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·과실이나 위법성 불필요
 - 기관의 장은 해당업무에 대해 대표하여 청구 가능

10

상임위원회 운영 및 의정활동 역량 강화

- ◇ 각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의원들의 역량 강화 및 의정활동 지원
- ◇ 시정 현장방문,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 우수시책 발굴과 의정발전 도모

□ 의정활동 전문역량 강화

- 조례, 예산, 행정사무감사 등 안건의 심도 있는 분석과 자료 제공
- 주민,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시책 발굴 지원
- 의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훈련 및 연수 실시
- 의원 연구단체를 활용해 주요시책, 제도개선, 규제개혁 등 발굴

□ 선진의정 구현을 위한 비교견학(벤치마킹) 실시

- 기 간 : 연중
- 대 상 : 타 시·군·구의회 및 지방자치단체
- 내 용 : 우수사례 발굴, 공유를 통해 의정발전 도모
- 방 법
 - 선진 사례 및 방문 가능 시·군·구 사전 조사
 - 상임위별 소관 위원 간 협의로 방문지 선정 및 방문
 - 벤치마킹 결과 보고서 작성 등 향후 정책 반영

□ 시정 주요현장 방문 활동

- 기 간 : 연중
- 대 상 : 시 추진 주요사업장, 기관, 기업체 등
- 내 용
 - 예산의 적정성 및 효율적 집행 여부 및 현장 확인
 - 대형 투자사업의 타당성 및 추진 시 애로사항(민원) 점검
 - 민원 발생 소지 파악 및 예방대책 수립 등

11

정책지원관 운영 및 의정활동 전문성 증대

- ◇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 도입 근거 마련
- ◇ 정책지원관 운영을 통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

□ 정책지원관 임용 계획 및 현황

- 관련근거 :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부칙 제6조
- 임용규모 : 12명 ('22년 5명, '23년 7명 임용 예정)
- 임용직급 : 지방행정주사보(일반임기제)
- 임용현황 : 4명

□ 정책지원관의 직무

- 의정자료 수집·조사·연구
 - 의원발의 조례안 작성, 정책개발, 시정질문, 5분 자유발언, 집행부 감시·견제 등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·조사·연구
 - 그에 수반되는 활동에 대한 실무 지원
-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,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
 -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 권한(제3절)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의정활동
 - 그에 수반되는 활동에 대한 실무 지원
-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

□ 직무 범위의 제한사항

- 정책지원관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여 직무 수행
-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, 업적 홍보 등은 지원 불가(공직선거법 제86조)

□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 역할과 구분

구분	정책지원관	전문위원
법적 근거	■ 지방자치법 제41조	■ 지방자치법 제68조
업무	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	■ 위원회 자치입법활동 지원
업무 예시	■ 의안작성, 입법정책 검토 (의원발의안 초안 작성 등) ■ 의원 시정질문에 필요한 자료 수집·분석·제공	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(조례안 등) 검토보고서 작성 ■ 위원회 차원의 정책자료 수집·조사·분석·연구